

제2차(2016~2020)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2015. 12.



국 토 교 통 부

**본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
하는 법정 계획임**

||| 목 차 |||

제1장 중기계획 수립 개요	1
제2장 제1차 중기계획의 평가	4
제3장 소음대책 관련 동향 및 전망	9
제4장 목표 및 추진방향	17
제5장 세부 추진계획	20
제6장 예산 및 자원조달계획	40
제7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44

제1장 중기계획 수립 개요

1. 법적근거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내용
5. 수립 및 추진 경위

1 법적 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

2 계획의 성격

-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소음대책 기관이 시행하는 기본 지침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2020년(5개년)
- 공간적 범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주변(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 등 6개 공항)

4 계획의 주요내용

-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공항소음 저감방안
- 공항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
-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5 수립 및 추진 경위

- 20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 9. 23. 시행)
- 2010. 12. 24. : 「제1차(2011~2015)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수립
- 2011년~2015년 : 「제1차(2011~2015)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시행

제2장 제1차 중기계획의 평가

1.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개요
2. 분야별 문제점 및 시사점

1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개요

□ 제1차 중기계획의 목적

- 5년 단위의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및 항공 교통 발전에 이바지

□ 제1차 중기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강화를 위하여 주민을 배려하는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소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최대한 방지 하도록 공간관리 강화
 - * (주요내용) ① 공항소음 발생원 저감대책 ② 소음대책사업 ③ 주민지원사업 ④ 소음영향도 조사 ⑤ 공간관리방향 ⑥ 자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

□ 제1차 중기계획 주요 추진실적

- 전체 사업비 2,674억 원 중 2,548억 원을 집행(95%)
 -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공항소음대책사업비 1,722억 원 집행(단위 : 억원)

구 분	기 간	계 획	실 적	추진율
기 시행	1994년~2010년	2,222	2,222	100%
제1차 중기계획	2011년~2015년	2,674	2,548	95%
계		4,896	4,770	97%

- 주민복지·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사업비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730억 원

- 소음영향도 조사,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및 주민유대 등 그 밖의 사업 96억 원 집행
- 소음대책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개정(2011)
 - 공항수익 중 착륙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75%에 해당하는 금액
- 김포공항 주변 소음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추가 (5개소) 설치(2012)
-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 2012년 제주공항(8.2→10.9km², 1,637→3,306가옥), 2014년 김해공항 (16.0→16.47km², 693→702가옥), 2015년 김포·인천공항 고시예정
- 저소음운항절차 제도 추가 시행
 - 김해공항(2013.3.4) 및 제주공항(2013.8.9) 지점별 소음기준 고시 및 소음기준 위반 시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
 - * 김포공항은 2007.12 최초 고시
- 고소음항공기의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 및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시 소음부담금 2배 부과 등으로 고소음항공기 운항제한 유도
-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효율적 공간관리
 -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의 철거 또는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추진
 - * 제1종 구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가”지구)으로 확대 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 소음대책지역에 지자체가 아파트 등의 신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토록 조치

2 분야별 문제점 및 시사점

□ 기본방향

- (문제점)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정부정책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민 홍보와 소통 부족
 -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는 방음·냉방시설 설치사업에 비해 공동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과 소음저감을 위한 정부노력 등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은 실태
 - 소음저감정책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개선요구사항의 의사전달 및 피드백 부족
 -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는 소음등고선의 획일적 적용으로 소음대책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인접 주민들의 불만
- (시사점) 주민홍보 및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된 사업효과 반감에 대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주민 간 원만한 소통체계 구축 필요

□ 공항소음 저감방안

- (문제점)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면서,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등의 노력이 다소 미흡
 -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인방안 및 인센티브제도 부재 등
- (시사점) 단계별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근본적 소음저감을 위한 다양한 소음대책사업 및 제도개선과 연구과제 필요

□ 공항소음대책사업

- (문제점) 사업관리와 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민원 발생, 냉방시설 가동기피 등으로 소음대책사업 효과 반감 등

-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시설 가동기피, 하자보수 관계 등
- (시사점) 실질적 주민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관리 필요

□ 주민지원사업

- (문제점)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주민간 의견상충 및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고려 미흡 등
 - 사업시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이해당사자간 책임 소지 불분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
- (시사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일원화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

□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문제점) 국고지원금의 배정범위 예측이 곤란하고, 공항시설 관리자 부담 사업비의 정산과정이 복잡하여 사업관리가 어려움
 - 소음부담금 이외에 국고지원금의 배정범위를 기획재정부 등의 의사에 따라 변동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애로
- (시사점)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 방향

- (문제점) 소음 심층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등의 실적 미흡
- (시사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제3장 소음대책 관련 동향 및 전망

1.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 및 전망
2. 항공분야 여건변화 및 전망
3. 외국의 항공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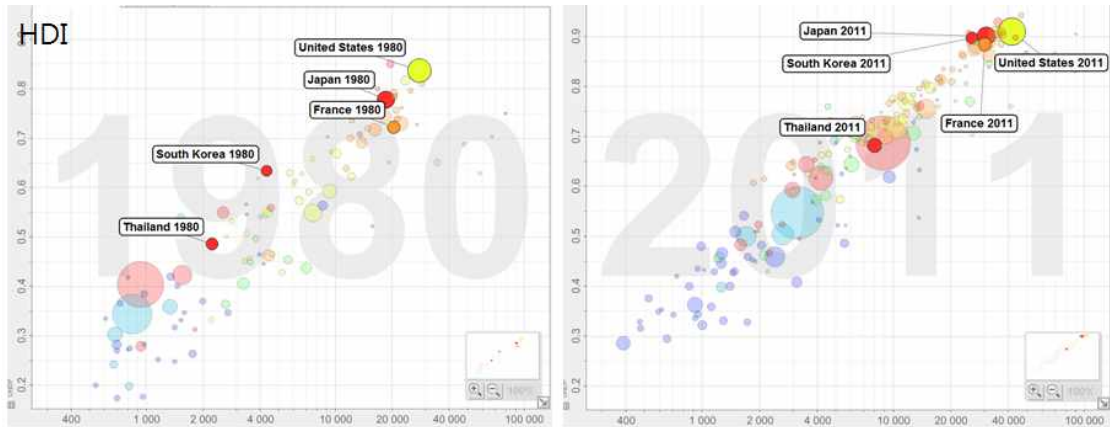
1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 및 전망

□ 미래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반영

- 유엔미래보고서 2040을 토대로, 향후 10년을 지배할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제 항목 추출
 - * 창조국가, 모바일 커머스, 소셜 미디어, 미래예측기술과 기구, 지속가능한 도시, 급격한 기후변화, 로봇귀환, 맞춤형제, 재능전쟁, 지능향상, 빅데이터, 3D프린터, 양자컴퓨터 등
-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문화를 바꾸는 소통하는 매개체로 등장
- (미래예측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예측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습득이 용이하나, 국가 정책이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
- 장기적으로 소음 중기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인적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인 권한의 강화로 전환

□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 따른 국민중심의 정책변화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한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를 고려
 -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의 교육수준, 1인당 평균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의 삶의 질을 점수화,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비해 2011년 급격히 상승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기계획에서는 국민 중심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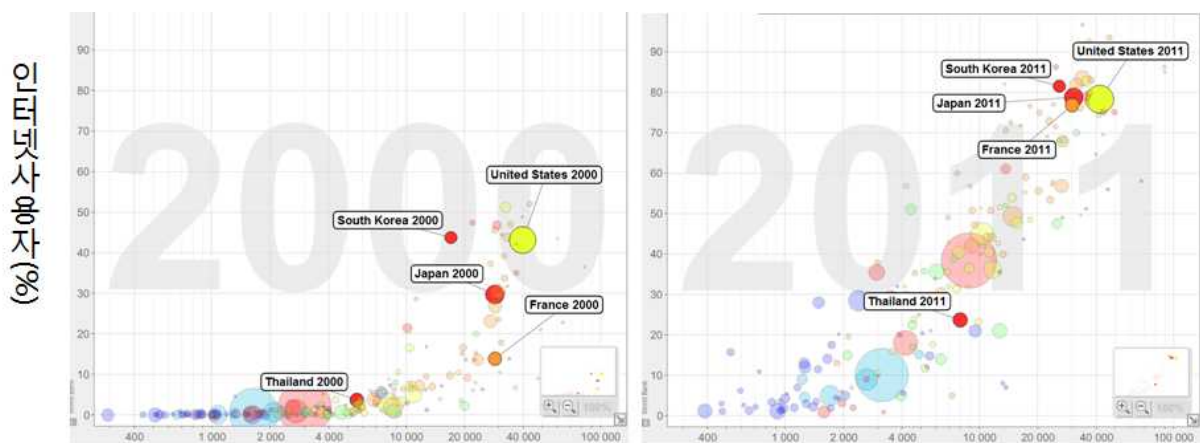
Income(GDP/capita, inflation-adjusted)

자료: Gapminder World.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 선진국 수준으로의 기대수준 향상 >

□ 효율적 소통 창구 마련

-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률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파급효과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보에 대한 사회적 변화 심화
 - 정부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 중기계획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매개체 역할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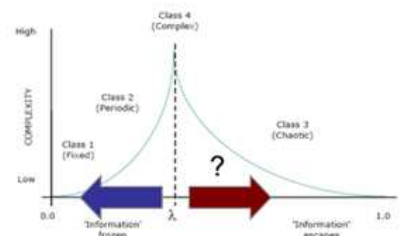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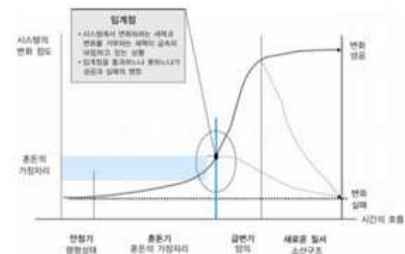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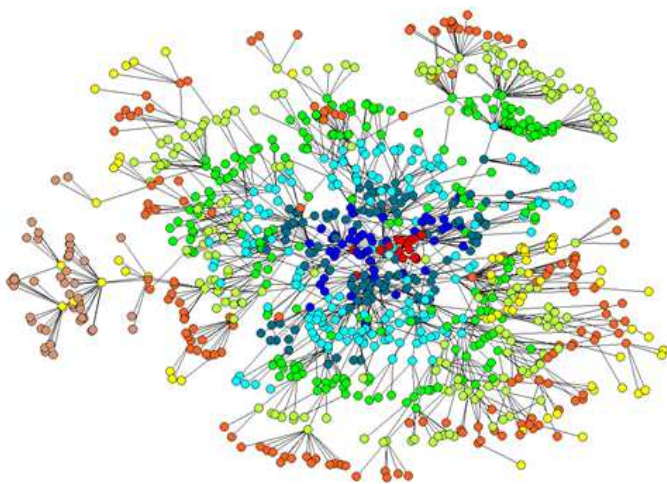


Income(GDP/capita, inflation-adjusted)

< 인터넷의 발달 >

□ 사전적이고 예측적인 대응

-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필요
- 특히, 소음정책은 국민의 불편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문제점 대응 시기가 중요
 -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폭 야기
- 따라서, 소음저감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시 사회의 변화를 사전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변화 급속화 및 복잡성 증가 >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중기계획의 수립 방향

- 문제점 해결위주의 대응적(Reactive) 정책이었던 제1차 중기계획에 반해 제2차 중기계획은 사전적(Proactive) 정책으로 변화 필요
 - * 대응적(Reactive) : 제시된 문제 위주의 평면적 대응, 고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고 현실 중심의 타당성 중시, 의사결정자 중심
 - * 사전적(Proactive) : 원인 및 관계에 근거한 입체적 대응, 다양한 미래 반영 및 미래 창조역할 수행, 국민중심 의사결정
- 따라서, 입체적 대응과 국민중심 위주의 소음정책 추진을 위해 제2차 중기계획 수립 방향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



< 중기계획 검토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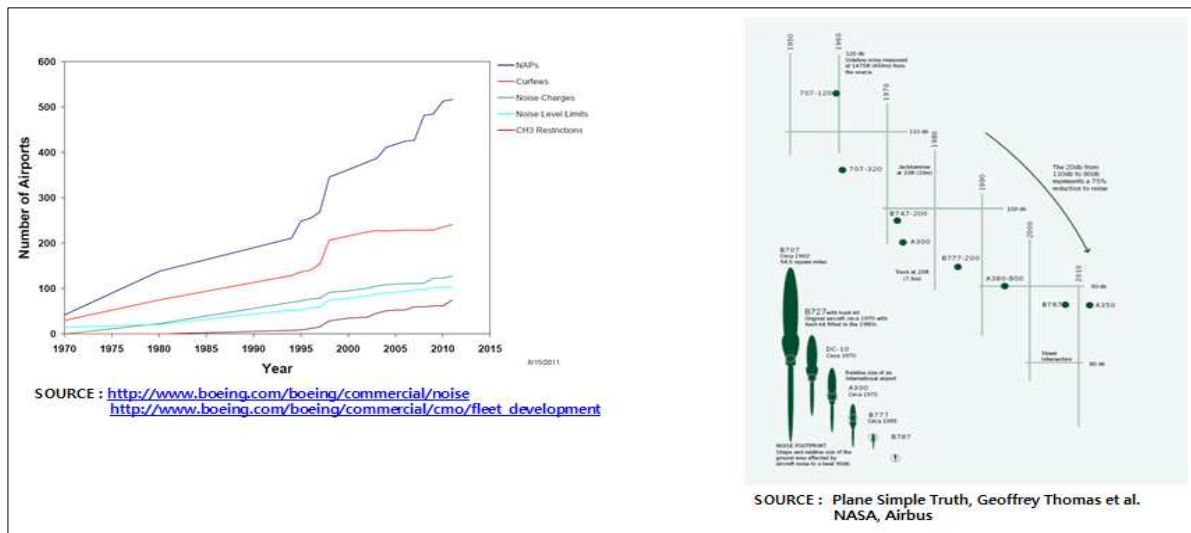
2 항공분야 여건변화 및 전망

□ 항공분야 일반 동향

-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분야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내륙노선의 수요는 다소 정체되는 반면, 제주·김해공항의 수요가 지속 증가

□ 소음저감정책 공항의 증가 및 저감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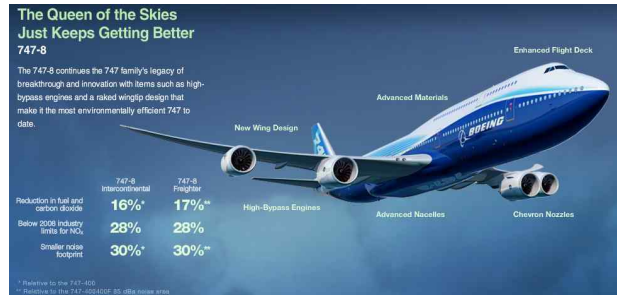
- 항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소음규제 등에 대한 정책은 197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할 때 급격히 증가
 - 운항제한시간(curfew), 저소음운항절차, 소음부담금 부과, 소음 기준 설정 및 강화 등



< 전 세계 공항의 소음규제(좌) 및 기종별 추력(우) 비교 >

- 세계 항공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의 보잉社와 프랑스의 에어버스社는 항공기의 신기종 개발 시 소음저감에 많은 연구
 - 자사 기종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 보잉 및 에어버스사의 신기종 소음저감 기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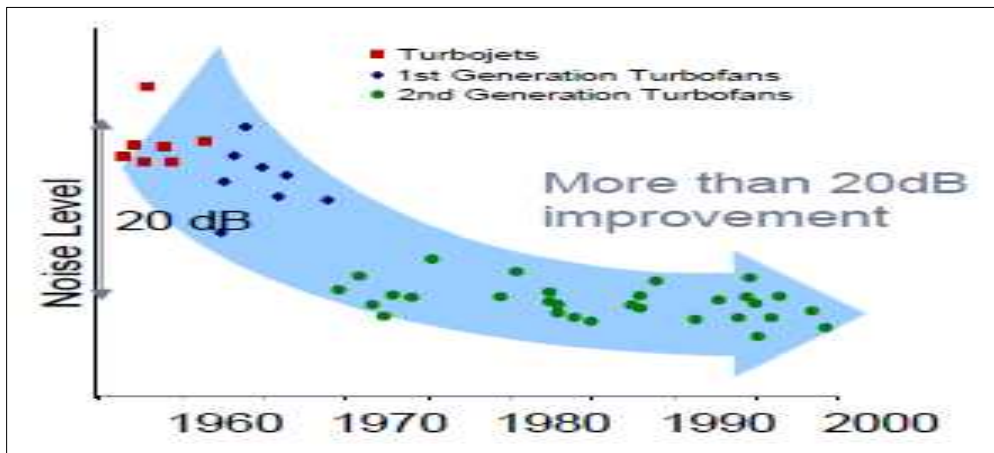
주 : 보잉사의 B787 경우 B767 대비 40%, B748 경우 B744(F) 대비 70% 소음저감효율이 높음.
자료 : 보잉 자료.



주 : 에어버스사의 최신키종인 A380, A350X, A320neo의 경우 ICAO Chapter 4 소음기준 보다 각각 17dB, 16dB, 15dB 보다 낮아 소음저감율이 높음.
자료 : 에어버스 자료.

○ 과거 40년간 항공기 제작사는 약 20데시벨(dB)를 감축시키는 성과를 달성

- 기체소음의 최소화를 위한 항공기 성능 향상, 저소음운항절차의 자동화 및 매뉴얼, 차세대 항공기 엔진기술 적용 등



< 상업용 항공산업 부문의 소음감축 성과(에어버스 제공) >

□ 국제기구의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표준 강화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환경보호위원회(ICAO CAEP)는 2013년 2월 강화된 항공기 소음표준을 권고
 - * CAEP : Committee on Avi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항공기 소음, 배기가스와 전반적인 항공 환경요인에 관한 정책과 표준·권고기준 지원
 - 현행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6(Annex 16)에서 정한 Chapter 4 보다 7데시벨이 강화된 Chapter 14에 합의
 - 이 표준은 2017년부터 신형 항공기에 적용되며, 55톤 미만 신형 항공기는 2020년 이후 적용
- ICAO에서는 새로운 표준의 시행으로 2020년~2036년 간 소음 영향을 받는 인구가 약 100만 명 이상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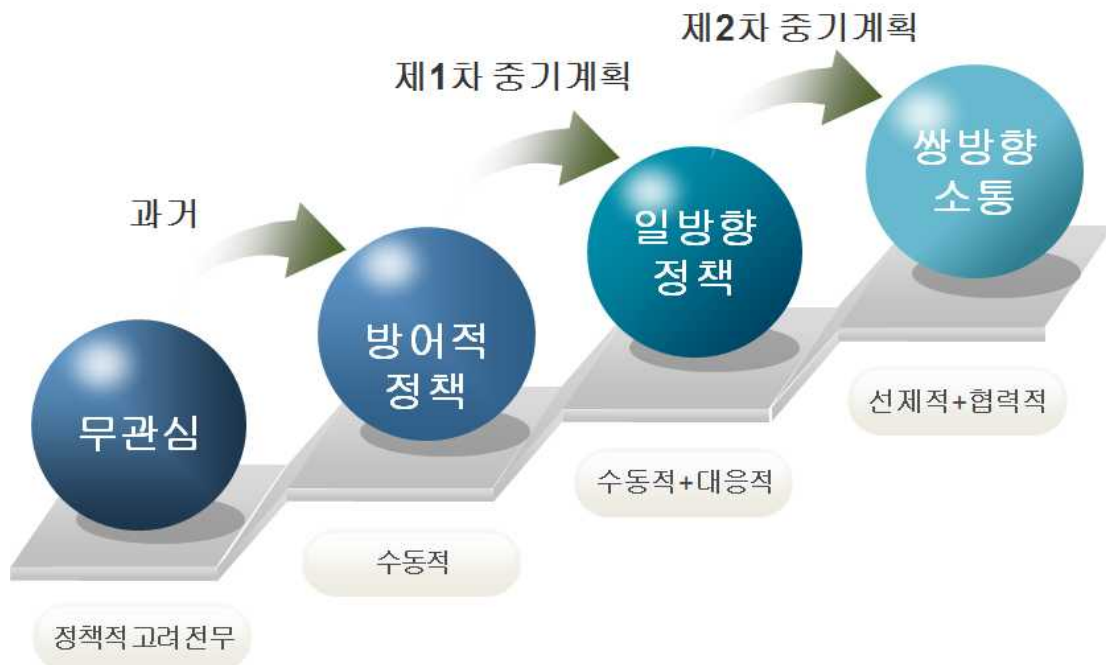
제4장 목표 및 추진방향

1. 소음정책의 기본 방향
2.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1 소음정책의 기본방향

□ 국민중심의 소음저감정책 추진

- 제1차 소음방지 중기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통강화와 체감도 높은 소음저감정책 및 소음대책사업 추진
 - 소음대책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갈등의 사전 예방, 성별, 연령별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시행
 - 환경·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및 미래 창조의 역할 수행
- 국민 중심의 소음저감정책과 소음대책사업으로 전환
 -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를 고려한 쌍방향 소통의 소음정책 추진



< 기존 소음대책사업의 발전과 본 중기계획 목표의 비교 >

2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가. 비전과 전략



나. 목표별 추진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9개)
▷ 주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유연한 소음대책사업	• 항공기소음 영향도 조사체계 개선
	•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개선방안 검토
	•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마련
▷ 근본적 소음저감을 위한 체계적 소음대책사업	• 소음측정망 개편 등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
	• 기존 소음대책사업 문제점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 공간적 관리 계획
▷ 정부와 국민 함께하는 소음대책사업	•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
	• 소음대책사업 효율성 제고
	• 소음 공감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제5장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을 이해하고 다가서는 소음대책사업 추진
2. 근본적 소음저감을 위한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 및 선제적 소음대책사업 추진
3.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소음대책사업
4. 사업 추진 계획

목표 1

주민을 이해하고 다가서는 소음대책사업 추진

□ 추진과제 및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 •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지침(매뉴얼) 마련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나: 주민을 우선 배려하는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방법의 합리화 •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소음대책지역 추가(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다: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합리적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배분비율 적정성 여부 검토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 기반 조성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1. 배경 및 필요성

- 공항주변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를 통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주체(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함에 따라 공정성과 주민신뢰성 저하
-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음대책사업을 위해서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 향상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내용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향상

- 공항시설관리자가 시행하던 소음영향도 조사를 정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사계획 및 과정 적극 공개
 - 소음측정지점 및 기간 등 사전공지,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공유

□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지침(매뉴얼) 마련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개선 필요시 수정·보완
 - 소음측정지점 선정 및 측정지점 수 등 구체화(공항공사 협조)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추진

-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 도모(영향도 조사와 병행)
 - 만족도 미흡업체 → 조사원 특별교육 등 시정조치(과업지시서 명시)
 - * 만족도 조사시 사업효과 확대 등을 위한 성별, 연령별 균형있는 대상 검토(조사결과 집계시 성별구분 통계 작성 검토)

1-나 주민을 우선 배려하는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소음대책사업을 위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
 -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
- 공항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고시와 고시 지역의 축소·확대 반복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 유발 요인
- 주민 우선적·합리적 적용방법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 및 개별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고시체계 보완·운용이 필요

2. 추진내용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방법의 합리화

- 소음기준에 대한 고시지역의 설정·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우선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한계점(갈등) 극복 추진
 - 항공기 운항횟수 감소, 장래 항공수요 전망의 변화 등으로 고시지역이 일시 축소 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고시체계를 유지(증가시 추가 고시)
 - * (적용 예) 고시 면적이 10% 이내 감소할 경우에는 기존 등고선을 유지하되 10% 이상 감소할 경우 축소고시 검토 추진(주민고충 감안)
 - 소음등고선 작성 시 주민 불편·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특성 반영하여 합리적 고시
 - * 공항운영 특성, 하천·도로·마을 또는 행정 구역 단위, 구릉지 및 단일 구조물 등 지형·지물 특성 등을 반영 → 주민 갈등·불편 최소화

- 소음영향도 증가로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어 변경(추가) 고시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시지역을 유연하게 적용
- 지역특성 등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등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소집 논의 등)에서 심층 검토 반영 추진

□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소음대책지역 추가(재) 조사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영향도 조사당시보다 항공 수요 변화(증·감), 비행절차·이착륙 항로 변경 등 변동사유 발생시 소음영향도 추가(재) 조사 검토 추진
- 소음영향도 추가(재) 조사는 해당 공항의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추가(재) 조사를 건의하면 정부와 전국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논의하여 추가(재) 조사 여부 결정

1-다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합리적 배분

1. 배경 및 필요성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주민복지·소등증대를 위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하였으나,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체감도 향상이 필요하고, 사업종류 선정 시 주민 체감적 사업 선정 필요
-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배분, 사업시행주체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한계
 -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실질적 추진 가능한 사업과의 괴리, 주민 대표 등이 사업시행하면서 주민들 간 이해상충 등

2. 추진내용

□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배분비율 적정성 검토 추진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예산편성과 사업결과에 대한 정산체계 강화
 -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되 시행주체 변경을 금지 (다만, 공공성이 확보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은 지자체 책임 하에 검토 추진)
 -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심사를 강화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완료 후 3월 이내 정산 유도
 -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시 통제 강화(목적 외 집행 방지)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배분기준 및 비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추진(공항공사 협조)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요소의 적정성 및 합리적 배분기준 검토
 - * 배분기준 변경 시 배분금액 변동 등에 의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중장기적 적용 검토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 기반 조성

-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주민지원사업비의 매칭비율 조정
 - 전년도 기준(행자부 고시) 전체 시군구를 재정자립도를 3분위(상, 중, 하)로 구분하여 5%씩 상향하도록 매칭비율 조정 검토

< 조정(안) > → 법령 개정 선행 등 적용방안 강구 후 추진 검토
△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75%:25%) → 상(75%:25%), 중(80%:20%), 하(85%:15%)
△ 그 밖의 사업(65%:35%) → 상(65%:35%), 중(70%:30%), 하(75%:25%)
* 기타 24시간 운영 등 공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방안 검토

- 주민지원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또는 패널티) 도입방안 검토 추진
 - 사업주체의 목적 외 사용 및 적기 정산 여부 등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우선·추가 배정 방안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부문을 매칭할 경우와 시설 설치 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방안 등
- 주민지원사업 평가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시 대국민 공개
 - 세부지침 공개를 통한 예측가능성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 기존 법령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항 소음대책사업비 등의 집행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및 지자체 등에서 건의시 정부에서 적극 지원 검토
 -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다양한 사업발굴 유도
 -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종류 다양화(필요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 적용 검토)

목표 2

근본적 소음저감을 위한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 및 선제적 소음대책사업 추진

□ 추진과제 및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소음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적정성 검토 및 효율적 운영 • 항공기 소음관리를 위한 기존 방향 재정립 • 항공기 소음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소통 강화 •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변경 대응 •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사업 효율성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추진 •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유지 및 하자보수기준 명확화 • 기존 소음대책사업의 대폭 확대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소음대책지역 주민 여가·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지역의 공간관리 강화 및 소음지역 인구 유입 억제

1. 배경 및 필요성

- 항공기 소음관리를 위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의무 부과(고시), 심야 운항시간 제한 및 항공기 소음등급제도 등을 운영 중
- 해외의 변화하는 동향 및 기술 발전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항공기 소음관리 보완·개선 필요
 - * 기술의 발전에 따른 ICAO의 신형항공기에 적용하는 소음적합증명 기준 강화, 성능기반항법(PBN) 등과 같은 신규 운항 절차 도입 등 국제적 추세 고려

2. 추진내용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적정성 검토 및 효율적 운영

- 소음대책 공항의 활주로 길이, 향로 직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의 적정성 검토
 - 기존 자동소음측정망에 대한 기준과 운영방안 재검토(전문기관)
- 자동소음측정망을 통합관리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 적발, 소음기준 설정, 항공사와 주민 소음민원 분석 등, 활용에 대한 구체성 강화 및 소음민원에 대응
 - 공항소음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과 항적자료 관리 및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소음분석센터, 한국·인천공항공사)

□ 항공기 소음관리를 위한 기존 방향 재정립

- 저소음항공기 도입에 따라 소음등급 분류체계 재검토 및 소음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방안 마련(도입 촉진 유도 효과 병행)
 - 항공기 소음등급(1~6등급) 및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검토

- 저소음운항절차가 고시된 공항별 소음기준을 재검토하여 국내외 동향을 반영한 합리적인 소음기준 설정 추진(전문기관)
 - 김포·김해·제주공항에 각각 적용하고 있는 소음측정 지점별 소음기준의 재설정 등 검토 추진
 - * 2020년을 목표로 현재의 소음기준 강화를 위해, ICAO에서 신형항공기에 적용하는 소음적합증명 기준 강화 등 국제적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정 조치방안 등을 강구(인천공항 항공기 소음기준 등)
 - 운항절차 수립 시 소음정책과 소음민원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 추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공항(양양·무안)에 대한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관리를 위한 기본자료·체계 준비
 - 공항시설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소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훈련용 항공기의 소음관리와 감시를 통하여 소음민원에 대응하는 방안 등
- 공항주변 소음관리를 위해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음설비 (방음벽 및 나무 식재 등)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검토 추진
 - 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한 소음대책 공항은 공항주변 방음벽 설치 검토, 후류 방음벽은 주민요구 등 필요시 검토하여 설치

□ 항공기 소음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소통 강화

- 소음저감정책에 대한 방향 분석 및 제안, 정부 및 공항시설 관리자 등과 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 * 필요시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별 주민 설명회 등 주기적 개최 검토 추진 (설명회시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참여 유도)
- 주민소통 및 홍보강화를 위해 소음정책 및 주요 실적을 소개 하고, 지역주민 등의 기고문 게시 등을 위한 브리프 발간

- 공항 비행절차·이착륙경로 등의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소음피해 예상시 소음대책지역 주민 협의·설명회 등 시행 검토

□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변경 대응

- 변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소음과 관련된 기술기준
개정립을 위한 소음단위 변경 추진(환경부 등) 상황에 적극 참여
하여 공항특성을 감안한 의견교류 활성화
-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변경((예시) 웨클→L_{den})의 급진적 추진 및
적용을 지양하고 공항특성과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 등 단위 변경 대응

□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 유도

- 항공기 조종사들의 소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소음저감과
관련된 가이드북 제작·활용 유도 및 소음저감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음저감 노력 최우수 항공사 선정·발표방안 검토 추진
- * (해외사례) Chicago O'Hare Fly Quiet Program Aviator's Manual,
Phoenix Deer Valley Airport Pilot Guide, Hillsborough Airport Pilot's Guide 등

1. 배경 및 필요성

- 소음대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직된 제도적용 및 운영 등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미반영에 따른 사업 효율성 감소
- 방음효과가 큰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15년)됨에 따라 새로운 소음대책사업 발굴을 위한 방향 제시 필요

2. 추진내용

□ 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추진

- 공항시설관리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사업대상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주민 직접 시행 허용
 - 사업대상자가 자비 부담을 통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기준 또는 성능 이상 설치를 위해 요구할 경우 허용
 - * 주민 지원시 적정 대가기준(표준, 평균) 적용방안 검토 지급
- 냉방시설 설치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임대의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추진
 - 관리 및 하자 보수, 도난, 파손 등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
- 소음대책사업과 관련한 공항시설관리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 등을 작성하고, 정책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유지 및 하자보수기준 명확화

- 설치가 완료된 방음·냉방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재설치하는 기간 등 관련법령(물품관리법령 등)에 따라 교체시기 및 유지보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 교체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유지보수기간 및 종류 등
- 하자보수기간의 구체화·명확화 → 설치시 주민설명 등 확인
- * 제작사 하자담보기간 등 주민 설명·확인, 동일개소 지속 하자발생시 하자기간 연장조치 등

□ 기존 소음대책사업의 대폭 확대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원하던 냉방시설 전기료 (여름철 3개월)를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원
 - * 전기료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자체 제반비용(추가 및 임시인력 등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 검토 추진
- 학교의 경우 고시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일반 주민은 고시 전·후를 구분, 중기계획 예산 범위에서 단계별 검토 지원
 - * 최초고시부터 현재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시행하고, 학교는 인근지역까지 추가 확대 지원 검토(필요시 법령개정 검토 등)
- 소음대책지역 장학금 및 주민행사비 지원, 결식아동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주민유대사업의 지속적 추진
- 공항별 지원규모 추가 및 정형화·규정화 검토
- 소음대책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등을 위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검토
 - * 이동검진차 구입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 여가·문화생활 지원 검토

- 여름철, 방학 및 연휴 등 항공기 운항 집중시기(시간)에 여가·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영화·연극·체육 관람권 제공 등 문화생활 활동 지원 검토
 - * 가족 또는 행정구역별 단위로 지원 검토(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조)

2-다 공간적 관리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 소음지역 최소화와 인구유입 억제를 위해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설물 설치와 용도를 제한
- 공항주변 소음대책 미지정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잠재적 피해 증가 우려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간적 관리계획 수립 필요

2. 추진내용

□ 소음대책지역의 공간관리 강화 및 소음지역 인구 유입 억제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의 확대를 통해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방지
 - 제1종 구역 청구대상 지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까지 확대하고, 매수지역은 주차장·공원 등 공용시설로 활용
 - * 소음영향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상·매수 추진
- 소음대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
- 소음대책 인근지역 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지역에 인구유입 억제가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에게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
- 지자체의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개발과 관련된 위원회 검토 사항에 소음 부문 반영을 유도하여 공항주변 공간·토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강화 추진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소음대책사업

□ 추진과제 및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향적 소음 민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소음민원 상담의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정책 추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개선 •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공감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이해하는 소음체험 프로그램 마련 추진 검토 • 항공소음 전문가 육성 및 업무 관련자 재교육

3-가 서비스 지향적 소음 민원 관리

1. 배경 및 필요성

-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관제·정책 등 각 분야별로 연관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업무처리
- 반면에 소음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필요
 - * 즉시성·신뢰성 있는 민원 대응으로 주민 불만·확산 최소화 필요

2. 추진내용

□ 항공기 소음민원 상담의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 소음관련 민원업무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단계별로 구축
 - 민원 대응에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 운영 및 상담원 배치 추진
 - * 상담원은 소음 특성,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1차적으로 직접 민원상담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교육시행 후 배치
 - 소음 관련 주요정보가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상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를 위해, 소음과 관련된 정보를 집대성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서비스 지향적 소음민원 관리와 효과적·실질적 필요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소음정책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축적

3-나 소음정책 추진체계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는 변화가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의 정책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 정책의 집행도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 또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미흡하고, 소음대책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체계 개선 필요

2. 추진내용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개선

- 상시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시 분야별 분과(정책분과, 기술분과) 구성 검토
 - 소음기준 위반항공기 제재의 적절성 판단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문 처리 등 활용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관련한 규정 보완·개선
 -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 기준 적용 등
-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이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방안 검토(지자체 추천시 고려하는 방안 등)

□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시행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기계획 진행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 시행(사업시행지역 주민 등)
 - 소음대책위원회 요구 등 필요시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 반영 검토 추진

3-다 소음 공감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1. 배경 및 필요성

-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공감과 소음에 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 소음 공감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종사자에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투명한 정보와 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2. 추진내용

□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이해하는 소음체험 프로그램 마련 추진 검토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고충이해와 우호적 관계형성 및 협업을 위한 비교·체험관 등 설치 검토(관계기관 협의 후 추진)
 - * 방음창 설치효과 비교 룸, 항공기 소음체험 시뮬레이터, 소음측정 및 항로 실시간 데이터 제공, 소음자료실 및 회의실 운영 등
- 민간공항과 군비행장의 소음영향을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공항 견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 항공소음 전문가 육성 및 업무 관련자 재교육

-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항공소음 전문가 교육과정 도입 검토 및 교육과정 이수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 마련
- 항공기 소음분야 종사자에게 소음저감정책, 대민업무 및 갈등 관리, 항공관련 직무 등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신규 및 재직자 등을 위한 소음관련 교육기관 지정 및 과정 신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검토
(공항시설관리자 및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교육 및 견학 검토 지원)

4 사업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세부과제	사업주체	'16	'17	'18	'19	'20	비고
1-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	지방항공청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 마련	국토교통부 공항공사(협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지방항공청						
1-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방법의 합리화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추가 (재)조사	지방항공청						
1-다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배분비율 재검토	공항공사 지자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2-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적정성 검토 및 효율적 운영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소음분석센터)						
	항공기 소음관리를 위한 기존 방향 재정립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기 소음영향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소통 강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변경 대응	국토교통부 (환경부)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 노력 유도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추진 과제	세부과제	사업주체	'16	'17	'18	'19	'20	비고
2-나	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유지·하자보수기준 명확화	공항공사						
	기존 소음대책사업의 대폭 확대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소음대책지역 주민 여가·문화생활 지원	공항공사 (지자체)						
2-다	소음대책지역의 공간관리 강화 및 소음지역 인구유입 억제	국토교통부 (지자체)						
3-가	항공기 소음민원 상담의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공항공사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3-나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개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시행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3-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이해하는 소음체험 프로그램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지자체)						
	항공소음 전문가 육성 및 업무 관련자 재교육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 공항공사 : 인천·한국공항공사

제6장 예산 및 자원조달계획

□ 사업별 예산 내역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김해 등 소음대책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비는 약 2,628억 원으로 예상

*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인천공항 약 141억원 별도 추진)

- 냉방시설 설치 등 기존 소음대책사업 : 약 1,380억 원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사업비 : 400억 원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위한 예비비 : 약 848억 원

* 보상·매수 청구 부재시 주민지원사업비 활용 등

<내역별 세부 사업비, 재조정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기 존 소 음 대 책 및 주 민 지 원 사 업	냉방시설 설치	5,460	5,460	5,460	5,460	5,460	27,300
	주택방음시설 재설치 및 하자보수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TV수신료 지원	815	815	815	815	815	4,075
	주민지원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학교 전기요금	345	345	345	345	345	1,725
	기초생활수급권자 전기요금	81	81	81	81	81	405
	소음측정망 운영	500	1,000	500	500	500	3,000
	소음영향도 조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음대책위 운영	300	300	300	300	300	1,500
	홍보, 주민유대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소 계	27,501	28,001	27,501	27,501	27,501	138,005	
추 가 사 업	전기요금 추가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예비)	15,154	15,031	16,894	18,195	19,535	84,809
	소 계	23,154	23,031	24,894	26,195	27,535	124,809
합 계	50,655	51,032	52,395	53,696	55,036	262,814	

□ 재원조달 방안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국고 지원금(소음부담금 포함),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조성

* 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1)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5개 공항

- 국고지원금(소음부담금 포함)

-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제2차 중기계획에서 확대 또는 추가되는 사업을 감안하여 필요 사업비 중 소음부담금 징수액 수준을 조성

* 항공기 운항편수 증가 등으로 약 400억 원(연간 약 80~9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부담금을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포함)	8,900	8,900	9,000	9,000	9,000	44,800

- 공항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한국공항공사에 한함)는 착륙료 수익의 75%에 해당하므로, 5년간 약 2,180억 원 조성

*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는 '14년 착륙료 수익(40,680백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3%씩 증액하여 편성한 금액이므로,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착륙료 수익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5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공항시설관리자 부담비	41,905	42,132	43,395	44,696	46,036	218,164

○ 지방자치단체 재원

-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비의 일정비율(최대 35%) 수준(매칭비)을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조성
- *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국회 등 검토의견)

2) 본인부담 시행(인천공항)

- 인천공항은 공항시설관리자가 자체적 재원을 마련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
- * 인천공항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가옥이 소규모이므로 국고지원 불요

제7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관계기관 역할분담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1 관계기관 역할분담

□ 국토교통부(정책수립 및 총괄 관리감독)

-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승인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 감독
- 공항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 지방자치단체(주민지원사업 시행)

-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필요한 대책 수립 및 재원 확보
-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협의 및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소음대책사업 주관, 재원조성)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
-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관리, 소음기준 위반 감시
- 공항소음대책위원회(필요시 기술분과 포함) 운영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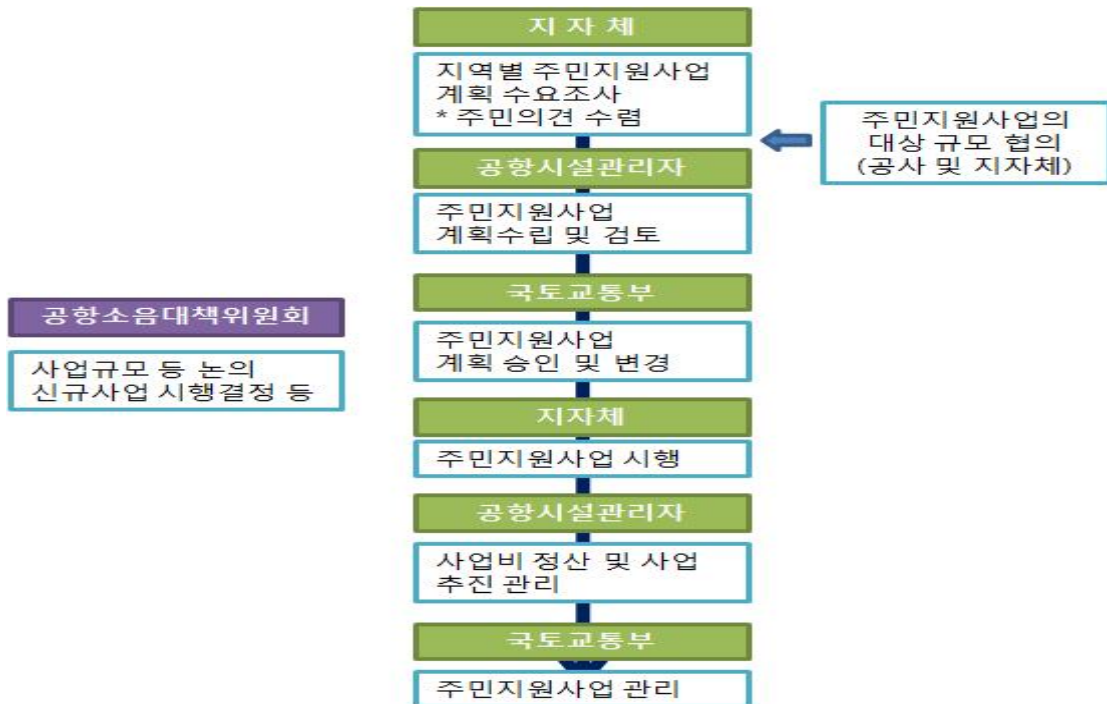
□ 항공사(저소음운항절차 준수 등)

- 저소음운항절차 준수 등 자발적 소음 저감 노력
- 소음부담금 납부

< 제2차 중기계획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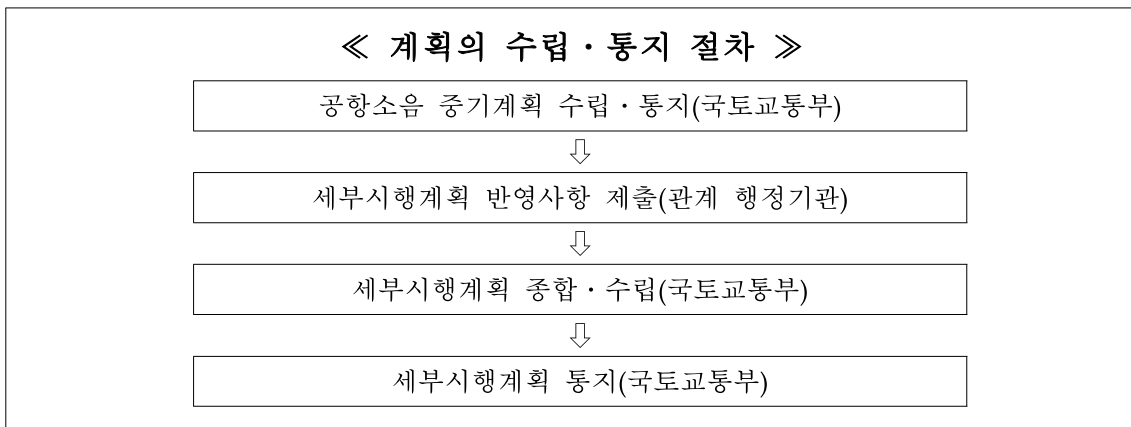
<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공항시설관리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전년도 9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관리자가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수립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지



□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수립이 완료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 여건변동 등으로 중기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 * 기타 법령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절차 등 관련절차 진행 후 시행